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3일, 이수진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

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는 그 주기가 1년 내지 3년에 달하여 재난상황이나 감염병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아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재난상황 또는 감염병 확산 등의 비상상황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동원 및 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1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자료요청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법령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10.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법령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5항 및 부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생략) <u><신설></u>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 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 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 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u>3개</u>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u>6개</u>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